**워킹홀리데이 비자 체크리스트**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전에 아래에 적혀 있는 서류들을 모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시려는 서류들은 폴란드어 또는 영어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아래 적혀 있는 리스트 순서대로 서류들을 정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심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여권은 대사관에서 보관합니다.

|  |  |  |
| --- | --- | --- |
| **서류 종류** | **설명** | **√** |
| **신청서** | 대사관에 방문하시기 전에 인쇄하신 후 서명하셔야 합니다. 신청서 3번째 페이지 37번 (Place and date)에는 Seoul과 신청서를 대사관에 제출하는 날짜를 적어주시고 38번에는 여권에 적으셨던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
| **사진** | 3.5 x 4.5 cm (여권사진 규격) 의 포토샵을 하지 않고 하얀색 배경의 사진 2장 |  |
| **여권** | 비자 만료일까지 최소 90일 이상 유효해야하며 최소 2장 이상의 사증 면이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일 시: 외국인등록증(Alien Registration Card)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여권 사본** | 개인 정보가 적혀 있는 면을 복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폴란드 비자 또는 쉥겐 비자를 발급 받으신 이력이 있다면 해당 구 비자들도 복사하여 사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일 시: 외국인 등록증 사본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여행자 보험**  **(또는 장기체류보험)** | 해외치료실비가 최소 3만 유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보험 가입 기간이 희망하는 폴란드 체류 기간을 모두 보장해야 합니다.  제출 가능한 세계 보험사 리스트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gov.pl/web/diplomacy/visas> |  |
| **비행기 예약 티켓** | 발권을 미리 할 필요는 없으며 예약증을 제출하셔도 됩니다. 신청서에 적혀 있는 출발일과 비행기 예약증의 출발 날짜와 보험 기간이 모두 일치해야 합니다. |  |
| **재정 증빙 서류** | 신청인은 폴란드에 체류하는 동안의 비용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재정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 시 고려하는 비용 (본인의 체류비용을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1. 비행기 편도 티켓 제출 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티켓 비용: 2500 PLN ( 한화 약 80만원)  2. 폴란드 체류 기간 동안의 생활비: 최소 한달에 701 PLN (한화 약 25만원) (예: 6개월 비자 신청 희망 시- 701 PLN x 6을 한 금액)  3. 숙소 비용 (전체 체류 기간에 대한 숙소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예약한 숙소의 하루 숙박비용 x 전체 체류기간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가능한 서류 (여러 개 제출 가능)   * 신용카드 한도 증명서   (이용대금명세서 우편본 또는 한도이력조회서 원본 대체 가능)  (이메일로 받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폴란드 또는 유럽에 위치한 은행에 계좌를 갖고 있을 시**: 해당 은행의 계좌 잔액 증명서 (bank account statement)   **\*한국 계좌 잔액증명서 제출 불가능**   * 여행자 수표   재정 증빙 서류로 부모님 서류를 제출 시, 재정 보증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영문본 원본을 추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재정 보증서의 경우, 홈페이지 내 양식 첨부) |  |
| **거주지 증빙 서류** | 임대 계약서, 기숙사 입주 허가서, 호텔 예약증 또는 기타 거주지 증빙 서류 |  |
| **방문 목적 증빙 서류** | 선언서 (양식은 홈페이지에 첨부되어 있음)  폴란드 체류 기간 동안의 영문 계획서 |  |
| **모든 서류의 사본** | 모든 비자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입니다.  단, 비자 심사 후 원본 서류를 돌려받기를 희망하신다면 원본과 함께 사본 또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비자 수수료** | 대사관에서 현금 납부만 가능합니다. |  |

주한 폴란드 대사관은 신청인에게 추가 서류 요구와 필요할 시에는 인터뷰를 할 권한이 있습니다.

내셔널 비자는 최대 60일까지 심사에 소요될 수 있습니다.

(출국 예정일이 60일보다 덜 남았을 때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신청인의 책임 하에 접수됩니다. )